

2026. 학습력키움 프로그램 외부강사 공모

장성여자중학교에서는 학습력키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습력키움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연번	부서명	모집 인원	강사료	비고
1	영어 기초	1	37,000원	연간 40시간 내외 (학교일정에 따라 운영시간은 증감될 수 있음) 수요일 (7교시, 8교시) (교시당 45분 수업)
2	수학 기초	1		

2. 모집 세부 사항

- 가. 공고 기간 : 2026년 4월 14일(화) ~ 2026년 4월 20일(월) 16:00까지
- 나. 서류 접수 : 2026년 4월 14일(목) ~ 2026년 4월 20일(월) 16:00까지
- 다. 접수 방법 :
 - 방문접수 : 장성여자중학교 교무실
 - 전자우편 : dms1985@naver.com
-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 마. 합격자 통보
 - 1) 1차 서류 심사 : 2026년 4월 21일(화) 09:00~ (유선 및 문자 개별통보)
 - 2) 2차 면접 심사 : 2026년 4월 21일(화) 13:30 본교 스마트실
 -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4월 21일(화) 16:30~ (유선 및 문자 개별통보)
- 바. 계약 기간 : 2026년 5월 ~2027년 1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 조건

-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대체 강사 금지)
- 다.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자기소개서, 자격증, 기타 증빙자료 등 (「서식 1,2,3」 참조)

5.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은 합격자 공고 이후 14일까지이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라. 문의 전화 : 061-878-7340

2026. 4. 14.

장 성 여 자 중 학 교 장

서식 1

학습력키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응 시 원 서

①쪽

접수번호						사진
신청 프로그램						
지원자	성명	한글		성별	남 / 여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주소 : 연락처 : (집) (핸드폰)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분야	상태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관	기간	기관	기간

자격 및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면허명	수여기관	비고

관련 수상 경력	취득년월일	수상명	수여기관	비고

본인은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강사 선발을 위해 장성여자중학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제공에 동의하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안서 평가 만료일까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출하는 운영 제안서에 허위의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일

지 원 자

□

장성여자중학교장 귀하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②쪽
운영	요일	수요일		교재	교재명(출판사)	예정가격*
	운영시간	1주당 2차시				
* 예정가격은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 교재의 최고액						
강좌 목표						
주요 교육내용						
주요 강의 방법						
평가 방법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자율적으로 기술

서식 2

자기소개서

자기 소개서



자유롭게 기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